

졸업논문 시행 규정

제정 : 1976.04.01

최근개정 : 2013.08.2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52조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논문 구별)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연주회, 졸업작품전, 졸업공연, 실험실습 보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[2007.6.13개정][2013.8.21개정]

제3조(논문 제출 자격) ①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제8학기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(취득학점,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)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정된 일정에 따라 논문지도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.
② 복수전공자의 제2전공 논문은 졸업직전 학기 중 제출하고, 기타 자격요건은 전항과 같다.

제4조(논문작성 계획서 제출)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 2학기 전 지정된 기한 내에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
② 논문작성은 단독연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논문지도교수)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
②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논문연구반(콜로퀴움)을 첫 학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③ 졸업연주회 및 졸업작품전은 전항의 규정에 준하며, 종합시험으로 논문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6조(졸업논문 작성 단계) 졸업논문은 다음 <표 1>과 같이 4단계로 작성하여 단계별 지정기일까지 각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안에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[2006.10.11개정][2008.1.23개정]

<표 1> 졸업논문 작성 단계

구 분	규 격	제 출 기 일	
		전기졸업 예 정 자	후기졸업 예 정 자
논문개요 제 출	A4*3매 내외의 개요 및 참고자료 목록 첨부	7학기초 4월 7일	7학기초 9월 30일
초고제출	A4*(5매~10매)	제8학기 등록 전	제8학기 등록 전
원고제출	A4*15매 내외	10월 31일	4월 31일
완성된 졸업논문	따로 정하는 체제로 제본 및 CD로 제출함	기말고사 전까지	기말고사 전까지

제7조(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 위원은 학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선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 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심사는 합격·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8조(논문심사 결과조치)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치 않고 수료자로 간주한다.

②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을 인정하되, 졸업정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.

③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)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논문심사 합격자격은 유효하다.

제10조(졸업연주) ①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연주를 실시한다.[2007.6.13개정]

② 졸업연주는 상당수준의 곡을 10분 내외로 연주하되, 건반악학부 반주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은 암보로 연주해야 한다.[2007.6.13개정]

③ 작곡 전공자는 10분내외의 졸업 작품을 연주해야 하며,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.[2007.6.13개정]

④ 졸업연주회는 2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1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.[2007.6.13개정]

제11조(졸업연주 계획서) 졸업연주 대상자는 졸업 2학기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실

기발표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.

제12조(졸업연주 심사 및 판정) ① 졸업연주 심사위원의 선정은 제7조 논문심사 규정에 준한다.

② 졸업연주의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13조(졸업작품전) 공과대학 건축학부, 미술대학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작품전을 개최하며,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전을 할 수 있다.[2007.6.13개정][2008.5.14개정]

제14조(졸업작품규격)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부(과)의 내규에 의하며, 해당학부(과)는 관련 내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[2010.1.27개정]

제15조(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)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은 제12조 규정에 준 한다.

제16조(작품전 개최일정) 작품제작과정, 작품제출 및 작품전 개최일정과 기타 세부사항은 단과 대학장이 정한다.

제17조(졸업작품의 보관) 미술대학의 졸업작품은 1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.

제18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각 단과대학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본 규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본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본 개정규정은 1993년 5월19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본 개정규정은 1999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.
- (5) 본 개정규정은 2002년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(6) 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.
- (7) 본 개정규정은 2008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.
- (8)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14일부터 시행한다.
- (9)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.
- (10) 본 개정규정은 2013년 8월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절 졸업과 학위

제52조(졸업논문)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질상 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 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.

1. 졸업논문의 제출시기는 최종학기 소정기일 내로 하고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할 수 있다.
2.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최종 학년 초까지 위촉되어야 한다.
3. 논문은 1명 이상의 교수가 실기발표는 최소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(합격)여부를 판정한다.
4.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되, 개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.
 - ② 졸업논문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.
 - ③ 기타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 - ④ 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은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.